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의왕시 관내 소재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 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심사 시 고문회계사 심사 가능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 3. 상기 제2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라 처벌(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시숲(2권역) 연중관리 공사

나. 공사위치 : 시설녹지, 씬지공원(백운지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공사개요 : 예초 2회

마.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바. 공사에정(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69,652,000	69,652,000	63,320,000	6,332,000	-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
- ③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의왕시** 업체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7. 8. 18:00 ~ 2026. 7. 14. 12:00

나. 개찰일시: 2026. 7. 14. 13:00

다. 개찰장소: 의왕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입찰)으로만 집행되며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견적제출 사항으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pm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3,912,853원**

다.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의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개 업체에서 1개 권역만 낙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 권역에 낙찰된 업체는 나머지 권역의 낙찰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1, 2권역 순으로 개찰)

5. 보험료 등 법정경비의 계상 및 사후정산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용내역서, 납입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292,019	1,707,119	169,771	743,944	0	0	0	3,912,853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별첨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더불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요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의왕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으로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견적(입찰)참가 또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임금 등 우선지급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 및 발주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그밖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 가.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협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 없는 공사 포함)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전자대금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의왕시 청렴계약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의왕시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우선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의왕시 거주자(의왕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마.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수급인)는 선금·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현황 실시간 공개 및 장비·자재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및 SMS안내 등 제도시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바. 우리 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실 031-345-2062)
 - 의왕시홈페이지> 시민소통> 청렴신문고> 공직자부조리신고
- 사.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 열람 및 문의: 의왕시 공원녹지과(031-345-3833)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문의: 의왕시 회계과(031-345-221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의 왕 시 (분 임) 재 무 관

< 별첨 1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의왕시	발주부서 :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또는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기타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의왕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